



—〈南北交流・協力分科委員會〉—

第2次會議會議錄

1992. 4

統 一 院

<目 次>

1. 一般事項..... 3

2. 會議錄..... 7

1. 一般事項

가. 日 時 : 1992. 4. 18(土), 10:00~12:25

나. 場 所 : 板門店 북측지역 『統一閣』

다. 參席者

구분	우 리 측	북 측
위원장	林東源 (남북고위급회담 대표)	김정우 (남북고위급회담 대표)
위 원	金仁浩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 宋榮大 (통일원 자문위원) 朴雲緒 (청와대 경제비서관) 柳得煥 (상공부 제1차관보) 辛鉉雄 (문화부 문화정책국장) 朴秀蒼 (총리실 정책심의관)	김채성 (정무원 사무국 부장) 손종철 (무역경제연구소 부소장) 김이순 (문화예술부 국장) 류창석 (국가계획위원회 부국장) 정덕기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 김승국 (로동청년사 부주필)
수행원	崔興植, 徐承一, 趙明均, 孫鍾洙, 李在浩, 金炳培	오풍근, 한영호, 김계익, 김창우, 김춘단, 신원철

會 議 錄

2. 會 議 錄

<雙方 委員 入場 및 人事 交換>

북(김정우) : 서울에서 떠나오는데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날이 좀 흐린 것 같은데...

남(임동원) : 비가 조금 내리고 있었어요.

북(김정우) : 지금 비가 옵니까?

남(임동원) : 예.

북(김정우) : 우리쪽엔 비가 오지 않았습시다. 요즘 좀 통신 들어 보니까 남쪽에 비가 많이 온 것 같아요.

남(임동원) : 지난주엔 비가 조금 왔어요. 아주 기다리던 좋은 비가 왔죠. 올해 농사가 잘될 것 같아요.

북(김정우) : 우리쪽은 13일전에는 조금 왔는데 14일부터 오늘까지는 개었습니다. 오늘부터 조금 흐리는 것 같아요.

남(임동원) : 우리가 꼭 한달만에 만나죠, 오늘?

북(김정우) : 딱 한달입니다.

남(임동원) : 딱 한달이죠.

북(김정우) : 합의서대로 한달에 한번씩.....(웃음)

남(임동원) : 너무 엄격히 지키는데.....(웃음)

북(김정우) : 합의서 엄격히 지키는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분과가 모범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남(임동원) : 다른 분과위원회들은 벌써 2차 회의를 갖고 내주에 3차 회의

를 갖는다고 그러는데, 우린 그동안 세번의 위원접촉을 갖고 사실 실질적인 내용협의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였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다른 분과위원회보다 많은 진전이 되었다고 봅니다.

북(김정우) : 앞섰지요? 회의차수는 다섯번째가 아닙니까?

남(임동원) : 전부 합치면 그렇겠구만.(웃음)

북(김정우) : 그래 난 오늘 아침에 여기 나와서 임선생을 기다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180여개 나라에 5,000개의 언어를 가진 20,000개의 민족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유일한 분단국가로 우리가 남아 있구나. 이젠 합의서도 채택했으니까 빨리 통일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협력·교류분과위가 통일의 밑거름이 되는 회담이 되게끔 할 수 있겠는가?

사실 우리 민족은 슬기로운 민족이 아닙니까? 경주에 있는 첨성대를 보아도 647년에 건설해서 우리 조상들이 기상관측을 했을 때 다른 나라는 엄두도 못냈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금속활자를 1272년도에 만들어 냈을 때 300년 지나서 독일사람들이 겨우 만들어 냈는데, 이러한 슬기로운 민족의 혈통을 이은 우리들이 지금 유일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것이 가슴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협력·교류분과위가 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자기 사명을 다해보고, 다른 분과위도 우리의 모범을 따라서 좀 통일대열에 성과를 남기도록 추동력을 주자, 이런 것이 제 생각입니다.

남(임동원) : 옳습니다. 동감입니다. 조상들만 잘한 것이 아니라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 겨레들도 세계적으로 뛰어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북쪽에서도 잘하고 있지만 남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기술면에 있

어서나 경제면에 있어서나 세계에서 최첨단에서 걸어나가고 있어요. 1등은 아니라 하더라도 3, 4등, 어떤 건 5, 6등, 10위권내에 다 들면서 우리 겨레의 우수성을 과시하고 있어요. 우리 남북이 통일만 된다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 힘씁시다.

난 오늘 분과위가 대단히 중요한 회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북(김정우) : 그렇게 준비해 가지고 나왔겠지요?

남(임동원) : 우리 보따리 큰 것 가지고 나왔는데, 북쪽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북(김정우) : 우리 보따리는 항상 큽니다.

남(임동원) : 그래요?

북(김정우) : 예.

남(임동원) : 기대해 봅시다.

북(김정우) : 3차 위원접촉 결과가 보여 주는데...

남(임동원) : 3차 위원접촉에서 수고들 많이 했어요. 잘했고...

북(김정우) : 임선생도 그런 의향이시라니까 오늘 회담은 통일지향적인 회담이 되리라, 또 우리 협력·교류분과위가 통일의 밑거름이 되는 이와 같은 일을 착실히 해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회담을 좀 시작해 봅시다.

남(임동원) : 그렇게 합시다.

북(김정우) : 그러면 오늘 회담은 어떻게 하렵니까? 우리 전번엔 공개로 했는데 회담형식을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남(임동원) : 뭐, 지난번에도 공개로 했으니까, 오늘도 공개로 하죠, 뭐.

북(김정우) : 그렇습니까? 그럼 공개로 합시다.

남(임동원) : 그쪽에서 오늘 회의를 주최하는 쪽인데 그쪽을 쫓아가겠습니까. 저희는 뭐 공개로 하는 것을 희망을 하고 있고...

북(김정우) : 그럼 오늘 회담은 공개로 하고, 사회는 관례대로 「통일각」에서 하니까 제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남(임동원) : 예.

북(김정우) : 그럼 기자선생님들 자리를 좀 정돈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좀 발언하겠습니다.

남(임동원) : 그렇게 하십시오.

<北側 基本發言>

림동원위원장과 남측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북남협력, 교류》의 리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와 북남협력, 교류공동위원회 구성, 운영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협력, 교류분과위원회 제2차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나는 먼저 협력, 교류분과위원회 제2차회의가 다시금 열린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면서 민족단합과 나라의 통일적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야 할 숭고한 사명을 안고있는 북남협력, 교류분과위원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측 《통일각》에 온 남측위원장과 위원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돌이켜보면 북남고위급회담 협력, 교류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자기 사업

을 시작한 때로부터 오늘로서 꼭 1개월이 됩니다.

력사적인 북남합의서를 하루빨리 실천에 옮겨야 할 민족사적요구와 제7차북남고위급회담에서 북남합의서의 리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를 발표시키고 공동위원회들을 발족시키기로 한 쌍방 합의사항에 비추어볼 때 이 한달이라는 기일은 결코 짧은 시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뿐아니라 우리 나라에서의 평화와 통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계진보적인민들은 분과위원회들이 순조롭게 진전되어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였습니다.

조국해방 50돌이자 민족분렬 50년이 되는 1995년을 통일의 원년으로 만들것을 공동의 목표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해 거족적투쟁을 벌리고 있는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그것은 너무나도 응당한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외인민들의 이러한 절절한 기대와 제7차북남고위급회담을 불과 17일 앞에 두고있다는 시일의 긴박성을 고려할 때 일이 제대로 되자면 지금쯤은 부속합의서와 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대한 내용적토의를 마무리짓고 적어도 문안정리를 시작하는 단계에 들어갔어야 할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아직도 부속합의서 내용토의에서 술한 미결문제들을 남겨놓고있으며 앞으로 협의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랭철히 사고해보면 이러한 상태로 나가는 경우 우리는 제7차북남고위급

회담전에 부속합의서와 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토의를 결속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모든 정황으로 보아 지금 우리는 협력, 교류분과위원회도 시대와 역사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매우 책임적인 시기에 처해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난 한달동안에 진행된 한차례의 분과위원회와 세차례의 위원접촉정형을 옹계 총화하고 거기에서 교훈을 찾는것이 필요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하고 다가온 7차북남고위급회담전에 분과위원회가 자기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측위원장과 위원여러분!

귀측도 아는바와 같이 지난 3월 18일에 열린 협력, 교류분과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쌍방이 각기 준비한 부속합의서초안과 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초안을 내놓음으로써 문제토의를 실질적으로 해나갈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정치분과위원회와 군사분과위원회에서 남측이 부속합의서안도 내놓지 않은데 비하면 다행스러운 일이였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쌍방이 내놓은 부속합의서안을 검토해보면 공동의 북남합의서 리행대책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공동점보다 본질적인 차이점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였습니다.

우리측이 민족공동의 통일촉진강령인 북남합의서와 《북남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충실하여 북남합의서의 조항별로 리행대책을 담아 단일부속합의서를 제기한 반면에 귀측은 부속합의서를

북남합의서의 조항들을 뒤섞어서 4개로 만들어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우리측이 내놓은 부속합의서는 분과위원회의 기능에 맞으면서도 합의를 쉽게 할 수 있게 합리적으로 된 것이었다면 귀측은 일부 문제들에 한해서 리행대책을 불필요하게 세부화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북남합의서의 일부조항과 관련하여 귀측은 문제의 해결을 인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이미 이룩해놓은 성과들을 무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쌍방의 부속합의서안을 내놓은 그 첫시기에 벌써 문제토의에서는 상당한 난관이 있으리라는 것을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우리측은 어떻게 하나 분과위원회앞에 부과된 과업을 원만히 실현하려는 일념에서 3월 25일부터 시작된 위원접촉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의견차이를 좁혀나가기 위하여 각방으로 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측의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세차례의 위원접촉에서는 북남합의서의 제3장 《북남협력, 교류》부문의 제15조에서 경제협력, 교류문제와 제19조, 제20조에서 교통수단을 연결하여 북남사이의 전반적인 협력, 교류를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문제, 우편과 전기통신을 보장하는 문제, 제21조 국제무대에서 북과 남이 협력하여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문제 등 일련의 문제들에서 쌍방의 안을 많이 접근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원칙적인 문제들에서는 쌍방이 근본적인 견해를 달리함으로써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북남경제협력, 교류사업에 어느정도로 당국이 개입하는가 하는 문제에서 쌍방의 의견은 근본적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측은 부속합의서가 발효되고 공동위원회들이 운영되어 대상과 품목선정 등 기본적인 협력, 교류방향이 토의 결정되면 그에 따라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북남사이의 경제협력과 교류사업에 참가할 수 있게 할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반하여 귀측은 당국의 승인을 얻은자들만 협력, 교류사업에 참가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북남사이의 협력, 교류사업이 자유롭게 진행되어야 한다는것을 인정은 하면서도 귀측의 경우에는 누구는 협력, 교류사업에 참가할 수 있고 누구는 참가할수 없다는 식으로 북남사이의 협력, 교류사업을 당국의 통제밑에 들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히 잘못된 견해라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귀측이 주장하는대로 쌍방당국이 북남사이의 경제협력과 교류사업에 대해 간섭하고 통제하도록 한다면 경제협력과 교류사업이 민족경제의 통일적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진행될수 없게 될수 있습니다.

더우기 지금 통일문제에 립하는 쌍방의 립장이 같지 않는 실정에서 경제협력, 교류사업에 당국이 개입하도록 해놓으면 경제협력, 교류가 일방의 정략적목적에 리용되는 후과를 빚어내게 될 수 있습니다.

북과 남이 북남합의서에서 자유로운 래왕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이상 원하는 모든 경제인들이 아무런 구속과 제약을 받음이 없이 북남사이의 경제협력과 교류에 참가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귀측이 북남경제협력, 교류당사자문제에서 당국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고 한것을 고집하는데 대하여 우리는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로, 평양과 서울에 경제사무소를 교환설치하고 판문점에 경제상담소를 설치운영하겠다는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측은 경제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것은 통일보다는 분렬지향적인 색채가 있는것이고 또 앞으로 몇시간이면 서로 왔다갔다하면서 거래당사자들이 직접 협의해결해나갈수 있으므로 경제사무소같은 기구를 구태여 상대측지역에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귀측은 기어이 평양과 서울에 경제사무소를 설치운영할것을 고집하고있습니다.

위원접촉에서 우리가 루차 강조한바와 같이 다른 모든 일에서와 마찬가지로 북남사이의 경제협력, 교류를 진행하는데서도 쌍방은 다른 사람들에게 분렬지향적인 인상을 주는 일은 크건 작건 철저히 피해야 합니다.

귀측이 경제사무소와 경제상담소를 설치운영하자고 하는데 대해 말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이미 북남합의서를 토의하는 단계에서 통일지향적이기보다는 분렬지향적인 색채가 강한것으로 해서 배격을 받은 상주대표부설치문제와 비슷한것이라고밖에 달리 볼수 없는것입니다.

셋째로,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래왕과 접촉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적, 제도적장치들을 철폐하는 문제에 대한 립장문제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래왕과 접촉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이 그를 저애하는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철폐하여야 한다는것을 주장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귀측에서는 그에 대하여 아무런 호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각계각층 인원들이 북과 남을 자유롭게 래왕하는것을 범죄시하는 법적, 제도적장치들이 존재하고있고 현실적으로 그러한 법적, 제도적장치들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있는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그러한 법적, 제도적장치들을 그대로 두고 자유래왕을 실시하겠다고 하는것은 한갓 말장난에 불과하며 그것은 민족적 단합과 통일을 바라는 겨레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으로 될것입니다.

넷째로, 쌍방의 부속합의서안에서 근본적인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는 문제는 기본합의서 3장 18조에 해당되는 북과 남으로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적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측은 북남으로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는 문제와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모든 문제들을 쌍방 적십자단체들의 주관하에 해결해나가도록 하고 쌍방당국은 빠른 시일안에 이미 진행해오던 적십자회담이 개최되도록 적극 협력할것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주장은 적십자의 독립성을 선언한 국제적십자의 결의사항과 이미 20년간 진행하여온 쌍방적십자단체들의 합의사항을 존중하여 인도적문제의 해결을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그러나 귀측은 쌍방 적십자단체들을 무시하고 그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까지도 당국이 떠맡아 하자고 제기하고있습니다.

귀측도 잘알고있는바와 같이 북과 남의 적십자단체들은 벌써 1971년부터 회담을 시작하여 그동안 많은 문제들을 합의하였습니다.

더우기 1985년에 쌍방적십자단체들은 북남으로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불행과 고통을 시급히 덜어주기 위하여 자유래왕을 실시할데 대해서까지

합의하고 그와 관련한 실무적토의에 들어갔습니다.

비록 북남적십자회담이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중단되어있지만 이제 회담이 재개되기만 하면 상정된 문제들에 대한 토의를 결속짓고 북남으로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래왕을 실시하는 문제를 해결해나가게 되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귀측주장대로 한다면 20여년동안 쌍방적십자단체들이 공들여 기록해놓은 귀중한 합의사항을 순간에 날려보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인도주의문제해결을 1971년도 수준으로 후퇴시켜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시 토의하지 않으면 안되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들의외에도 지금 쌍방의 부속합의서안에 여러가지 차이점들이 남아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차이점은 대략 이상과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때문에 쌍방의 부속합의서안에서 이러한 차이가 생기게 되었고 세차례의 위원접촉에서도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였는가 하는것입니다.

그 원인을 따져보면 그것은 이미 발효된 합의서들에 대한 그 무슨 해석상의 차이나 또 시간이 모자라서 초래된것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우리는 귀측의 부속합의서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위원접촉을 하는 과정에 그것이 그 어떤 착오나 방법상차이에 있는것이 아니라 합의서리행과 회담에 립하는 근본립장과 관련되어있다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그에 대한 우리의 솔직한 심정을 몇가지로 말씀드리려

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귀측이 북남사이의 협력, 교류사업을 민족단합과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앞당겨나가기 위한 립장에서가 아니라 분렬주의적립장에서 다루어나가려 하고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는 기본합의서의 서문에 명백히 명기되어있는바와 같이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해나가는 과정에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임을 인정하고 진행하는 민족내부사업입니다.

그런것만큼 쌍방은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사업은 응당 민족단합과 통일에 이바지하는 협력과 교류사업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측은 말로는 북남사이의 협력, 교류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한데 기초하여 진행해나가야 한다고 하면서도 실지로는 협력과 교류사업을 통일보다 현분렬상태를 고정시키는데 리용하려 하지 않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귀측의 기본적인 《통일정책》에 대해서 말하지 않더라도 부속합의서 토의과정만 놓고 보더라도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귀측의 경제협력, 교류문제와 관련하여 거래당사자들로서 당국의 승인을 받은자로 한정하자고 하는것이나 평양과 서울에 경제사무소를 설치하자고 하는 것도 그 대표적실례의 하나로 됩니다.

우리가 알건대는 지금 귀측에서 경제인들이 승인을 꼭 받지 않고도 다른 나라 기업인들과 거래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귀측은 무엇때문에 북남사이의 경제협력, 교류를 민족내부거래로

하자고 하면서 반드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할수 있게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경제협력, 교류분야에서 북남사이를 지금 남조선과 다른 나라들사이 관계보다도 더 격폐시켜 보자는 것으로밖에 달리볼수 없습니다.

그리고 평양과 서울에 경제사무소를 교환설치하자고 하는것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귀측이 북과 남을 서로 다른 나라로 보지 않는다면 나라와 나라사이에서 하는것과 같이 평양과 서울에 경제사무소를 설치하자고 하는 귀측주장은 북남사이의 경제협력과 교류를 통일에 립하는 자세가 아니라 분렬지향적인 립장에서 다루어나가려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우리는 귀측의 그러한 립장을 제1차분과위원회 회의때에 벌써 똑똑히 간파하였습니다.

귀측은 제1차분과위원회 회의에서 한 기초발언에서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실현해나가는것이 이른바 《혈연공동체》, 《경제공동체》, 《사회문화공동체》를 회복하는것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이 지난시기 서로다른 국가들사이에서 통하고있는 《태평양공동체》요 《구라파공동체》요 하는 말과 같았는데 대해서와 《태평양공동체》나 《구라파공동체》가 국가들사이의 리해관계로부터 출발하여 표방하는 말이라는데 대해서 부정하지 못할것입니다.

결국 귀측이 북남협력, 교류를 그 무슨 《공동체》회복을 위해서 한다는것은 우리 나라의 현분렬상태를 그대로 둘것을 전제로 한것이며 엄중하게는 귀측에서 북과 남이 영원히 《두개 국가》로 공존해나갈것을 목표로 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책략의 일환으로 리용하려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둘째로,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귀측에 북남합의서를 성실히 리행하려는 실천의지가 결여되어있다고 보지 않을수 없습니다.

길게말할 필요도 없이 지난 2월 평양에서 진행된 제6차회담에서 발효시킨《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는 무려 1년반 동안에 걸쳐 쌍방이 토의를 거듭하면서 다듬고 다듬어서 조국통일의 리정표로 만들어진 완성된 합의문건이며 더우기 쌍방총리들이 서명하였을뿐 아니라 각기 필요한 비준절차를 거친 력사적인 합의문건입니다.

따라서 북과 남은 덜지도 보태지도 말고 북남합의서를 그대로 리행해야 하며 어느일방도 그것을 자기의 일방적인 리해관계에 따라 해석하고 처리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우리 분과위원회로 말하면 다름아닌 북남합의서의 해당부분의 리행과 준수를 위한 대책을 담은 부속합의서를 채택해야 하며 부문별 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토의해결해야 할 무거운과업을 지니고있습니다.

이로부터 분과위원회는 응당 북남합의서의 조항대로 리행과 준수를 위한 대책을 협의하여 부속합의서를 채택해야 합니다.

실지로 북남합의서를 성실히 그리고 빨리 리행하려는 사람이라면 그누구도 이를 부인하지 못할것입니다.

그런데 귀측은 부속합의서안을 4개씩이나 제기하였을뿐아니라 그것도 북남합의서의 조항별로가 아니라 그 무슨 《련관부분》이라는 구실밑에 조항들을 뒤바꾸거나 몇개 조항을 합쳐서 만들었는가 하면 한개조항을 갈라서 일부 내용을 이 합의서에 또다른 일부 내용은 다른 합의서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귀측이 부속합의서를 북남합의서조항별로가 아니라 복잡하게 뒤섞어 놓으면서 그것이 《련관부분》관계를 고려한것이라고 주장하고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북남합의서에 충실하지 않은 하나의 표현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측이 제1차위원접촉때에 쌍방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접촉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한데 대해서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귀측도 잘알고있는바와 같이 분과위원회 제1차회의때에 우리는 위원접촉을 가지고 거기에서 다른 문제들은 그만두고 쌍방이 내놓은 부속합의서안을 놓고 내용토의를 하도록 명백히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귀측은 1차위원접촉에 나와서 쌍방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북남합의서의 제3장의 첫조항인 제15조의 리행대책부터 토의하자는 우리의 주장을 거부하고 그 무슨 부속합의서 《작성원칙》부터 먼저 토의해야 한다고 역지를 부렸습니다.

우리의 론박에 의해 더는 자기의 부당한 주장을 고집할수 없게 되자 귀측은 이번에는 내용토의에 응하는것처럼 하면서도 15조부터가 아니라 엉뚱하게 북남합의서의 제18조부터 토의해야 한다고 고집하는가 하면 그것도 부당하다는것이 드러나게 되자 또다시 조항별토의가 아니라 《련관조항》을 같이 토의해야 한다고 주장해나셨습니다.

귀측의 이러한 주장이 력사적인 북남합의서를 무시하는 행동이며 순리에 맞지 않는 부당한 행동이라는데 대해서는 더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우기 귀측은 1차위원접촉때 난데없이 접촉을 앞으로 몇번하겠는가 하

는것부터 합의하자고 하는 도대체 이해할수 없는 주장을 들고나왔습니다.

접촉을 몇번하겠는가 하는것을 미리 정해놓고 회담한다는 말을 우리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으며 20여년을 헤아리는 북남대화력사에서도 그러한 약속을 해본일이 없습니다.

회담회수로 말하면 쌍방이 성의를 가지고 회담에 립한다면 열번 할것을 한두번에 끝낼수도 있으며 일방이 성의없이 회담에 립한다면 한두번에 끝날 회담도 오랜 세월 걸리게 될것입니다.

귀측도 사전에 회담을 몇번하겠는가 하는것을 결정하자고 하는 주장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데 대해서 모를리없다고 봅니다.

셋째로, 우리는 귀측이 하루속히 합의점을 모색하려는 자세도 심히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쌍방사이에 진행되는 대화와 접촉을 능률적으로 진행하여 빠른 시일안에 상정된 문제들을 토의해결하려면 자기의 주장만을 고집할것이 아니라 대방의 제안들중 받아들일것은 받아들이는 호상 존중과 양보의 자세를 가지고 회담에 립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측은 지난 접촉에서 부속합의서내용토의를 빠른 기간안에 끝내려는 적극적인 립장으로부터 제1차위원접촉때에 벌써 귀측부속합의서의 16개조에 해당하는 내용을 우리의 부속합의서 9개항들에 수용하였으며 제3차위원접촉때에는 2차접촉때의 귀측안을 다시금 받아들여 또다시 전진적인 수정안을 제기하였습니다.

그것을 좀 상세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물자거래가격을 국제시장가격으로 하는 문제, 각종자료 및 공업규격, 해당 법규를 교환통보하는 문제, 사회문

화분야의 성과와 경험정보자료를 교환하는 문제, 특허권, 상표권의 권리보장문제, 래왕자들의 무사귀환보장문제, 물자수송에서 직교역수송보장문제, 순안-김포공항사이 공로개설문제등 무려 13개의 조항을 새로 추가한것을 비롯해서 모두 20개조항을 수정보충하여 귀측의 26개조항을 수용함으로써 부속합의서 조항수를 종래의 29개로부터 42개로 늘였습니다.

그러나 귀측에서는 2차위원접촉때 수정안을 한번 가지고 나왔지만 그것은 극히 부차적인 문제들에 국한한것이였습니다.

귀측은 이처럼 쌍방위원접촉에서 회담의 진전을 위해 양보하고 아량을 보이는데서는 매우 린색할뿐아니라 똑똑한 대안도 내놓지 않으면서도 접촉시간과 그 회수나 연장하자고 하는 방법으로 회담에 대한 자기의 불성실한 립장을 가리우려고 하였습니다.

마음속에 문제토의를 지연시키려는 생각을 품고있는 조건에서 회담시간이나 연장하고 회담회수나 늘인다고하여 거기에서 해결될 것이 아무것도 없을것이라는데 대해서는 구태여 더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귀측의 이러한 부당한 행동을 놓고 많이 생각하게 되었으며 특히 북남합의서발효이후 귀측고위당국자들이 한 발언과 련결시켜놓고 보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귀측의 여러 당국자들이 북남합의서가 발효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기회있을때마다 그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북남합의서의 리행을 류보》하지 않을수 없다는 말을 해왔다는것은 세상이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말은 귀측 최고당국자도 하였고 북남합의서에 수표한 귀측총리도 하였으며 그밖의 여러당국자들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을 연결시켜놓고볼 때 귀측이 협력, 교류분과위원회 회의와 위원접촉에 나와서 취한 모든 행동이 두말할 필요도 없이 문제토의에 인위적인 복잡성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북남합의서리행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부터 출발한것이라는것을 누구나 쉽게 알수 있다고 봅니다.

거것으로 남을 속여넘기기에는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밝습니다.

귀측은 북남합의서리행을 지연시키려는 그릇된 입장을 고치고 온 겨레가 한결같이 바라는대로 하루빨리 북남합의서를 실천에 옮기려는 옳은 립장에서 돌아서야 할것입니다.

남측위원여러분!

앞으로 제7차 북남고위급회담은 17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니다.

제7차 북남고위급회담에서 북남합의서 리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를 발효시키고 공동위원회들을 탄생시키는것은 쌍방 합의사항이며 북남당국과 온 겨레앞에 확약한 어길수 없는 책임입니다.

분과위원회앞에 부과된 과업을 수행하려면 앞으로 두주일남짓한 기간에 부속합의서내용토의를 끝내야 하며 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 토의도 결속지어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많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되어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내외인민들이 심심한 우려를 가지고 우리 회담을 지켜보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자기앞에 부과된 공동의 과제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라와 민족앞에 커다란 죄악을 짓는것으로 될것이며 우리를 지켜보는 겨레

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게 될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의 회의는 우리 분과위원회가 자기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매우 중요한 고비로 된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오늘 회의에서 부속합의서내용토의에서 지금까지 걸림돌로 되여온 문제들을 타결함으로써 앞으로의 회담진전을 위한 돌파구를 열어놓아야 할것입니다.

그러자면 우리 쌍방이 다같이 옳은 입장과 자세를 가지고 새로운 기분으로 회담에 임해야 한다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첫째로, 쌍방위원들모두가 북남합의서서문에서 명기된대로 북남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것을 인정하고 협력, 교류분과위원회 사업이 민족의 단합과 나라의 평화통일을 앞당겨나가는데서 이바지 할수 있도록 회담을 진행해나가는것입니다.

북과 남의 력사적인 합의문건들을 채택하고 회담을 하는것은 현분렬상태를 고착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족의 최대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쌍방은 하나의 제안을 놓고 한마디의 의견을 나눈다고 해도 우리 나라의 현분렬상태를 고착시키거나 《두개 조선》과 련결될수 있는 일은 조금도 없게 하여야 합니다.

당면하여 쌍방은 부속합의서의 조항들중에서 북남사이의 관계를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처럼 인식될수 있는 문제들과 민족적단합과 나라의 평화통일을 촉진하는데 걸림돌이 될수 있는점들을 찾아 스스로 철회하는 용단

을 내려야 할것입니다.

둘째로, 쌍방이 북남합의서를 하루라도 빨리 실천에 옮기려는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는것입니다.

북남합의서를 실천에 옮기자면 분과위원회가 그 리행을 위한 부속합의서토의를 하루속히 결속해야 합니다.

쌍방은 이미 제7차 북남고위급회담에서 부속합의서를 발효시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그 어떤 흥정을 해서는 안되며 더우기 북남합의서리행을 늦추려는 사소한 생각도 가지고 있어서는 안될것입니다.

귀측은 말로만 북남합의서를 빨리 리행해야 한다고 하지 말고 진심으로 북남합의서를 하루빨리 리행하려는 입장을 가지고 부속합의서토의에 성실하게 응해야 할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쌍방이 다같이 부속합의서토의에 복잡성과 난관을 조성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 북남합의서 조항별로 되는 리행대책을 다그쳐나가야 할것입니다.

셋째로, 쌍방이 자기의 주장만을 내세울것이 아니라 민족적단합과 나라의 통일에 기여할수 있는 문제들은 서로 대방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아량과 양보의 미풍을 발양하는것입니다.

민족적단합과 통일의 의지를 담은 북남합의서를 채택, 발효시킨것은 북과 남이 온 겨레앞에 서로 대결하고 승부를 겨루어온 불행했던 과거와 결별한다는것을 확약한 엄숙한 선언으로 됩니다.

따라서 북과 남은 더이상 네것내것을 가리거나 승벽내기를 하지 말아야

하며 민족단합에 유익하고 통일에 리로운것이라면 그것이 어느 누구의 주장이든지 관계없이 성근히 받아들일줄 알아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이미 위원접촉들에서 서로의 의견이 대치되어있던 문제들을 진지하게 토의하여 새로운 합의점을 모색해낼것을 제의합니다.

나는 이상과 같이 분과위원회 제2차회의에 립하는 우리의 립장을 밝히면서 귀측도 우리앞에 맡겨진 임무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문제토의를 순조롭게 진전시켜나감으로써 좋은 결실을 이룩하고 우리를 지켜보는 7천만겨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임동원) : 수고했습니다.

북(김정우) : 임위원장선생 발언할 차례입니다.

남(임동원) : 발언하기 전에 간단히 한 말씀드리고 발언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또 토의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위원장의 기본발언을 듣고 약간은 실망을 금할 수가 없고, 위원장의 기본발언이 이래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차 회의에서도 양측 기본발언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서로 의견이 같지 않기 때문에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의견이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의견이 꼭 같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다면 회의가 필요없고 협상이 필요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서로 타협하고 양보하려는 자

세를 가지고 풀어나가자 했었는데, 위원접촉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전부 초행길을 가는 것이고 접근방법이 이러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측도 있고 저러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측도 있는데, 너그럽게 서로들 이해하고 해야지, 오늘 그것을 전부 지적을 하면서 자기는 옳았고 상대방은 다 틀렸다 하는 식으로 한다면 듣는 사람이 별로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측의 잣대를 가지고 상대방을 재려고 할 때에 올바르게 재어질 수 있겠느냐? 자기측 사고를 가지고 상대방 사고를 틀렸다고 한다면 옳을 수 있겠느냐? 따라서 그런 이야기는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서로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47년 동안 갈라져 살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점에서 합의를 하기 위하여 노력했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더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약간은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런 문제를 우리 위원장들이 너그럽게 이해를 하고 차원을 높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제시해 줄 수 있기를 사실은 기대를 하였던 것입니다.

뭐 그것은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여기 발언문을 넘겨드리겠습니다.

저의 발언문은 지금 김위원장께서 하신 것과는 좀 전개방향이 다릅니다. 먼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제안을 또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합의를 봤으면 하는 충정에서...

<南側 基調發言>

김정우 위원장!

그리고 북측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갖게 됩니다.

나는 오늘 회의가 남북간 조속한 교류·협력 실현에 대한 온 거래의 기대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을 불과 보름정도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제1차 회의에서 「부속합의서」와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채택·발효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쌍방은 부속합의서에 관한 협의를 먼저 진행한 후 공동위원회 구성·운영문제를 논의하며, 부속합의서는 내용에 대한 절충을 끝낸 다음 그 형식을 결정기로 하는 한편, 부속합의서 내용검토를 위한 위원접촉을 갖기로 합의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 쌍방은 그동안 세차례의 위원접촉을 통해 부속합의서의 내용토의를 진행해 온 결과 몇가지 차이점을 제외하고는 상당부문에서 의견의 일치와 접근을 보았습니다.

나는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은 여러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동시에, 쌍방이 서로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온데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은 차이점들도 쌍방이 호양의 정신을 갖고 서로 이해하고 협

조한다면 능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쌍방이 양보와 타협의 자세를 갖고 원만한 합의를 생산하여 제7차 고위급회담에서 이를 서명·발효시킴으로써 남북관계에 또 하나의 진전을 이룩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북측위원 여러분!

나는 오늘 쌍방이 협의해야 할 과제로서, 첫째 부속합의서 내용상의 차이점을 조정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둘째로 부속합의서의 형식문제, 셋째 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문제, 그리고 넷째 우리측이 제시한 긴급과제 등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 문제들에 대한 우리측 견해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부속합의서의 내용조정 문제입니다.

우선 경제교류·협력분야에서 쌍방이 의견의 접근을 본 것으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을 비롯하여 물자거래의 청산결제와 관세면제, 각종 자료교환과 관련법규 상호통보, 교류물자의 직접수송과 경제활동 편의 보장, 특허권·상표권 등 과학기술상 권리보호 그리고 대외 공동진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견해차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경제교류·협력당사자 문제와 물자교환원칙, 관련기구설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측이 제의한 『경제교류·협력당사자의 당국 승인』은 그 근본취지가 교류·협력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이한 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남과 북이 교류·협력을 실시함에 있어 정부 당국의 책임성을 분명히 함으로써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고 선의의 교류·협력당사자를 보호하려는데 있습니다.

다.

더욱이 물자교류에 있어서 쌍방은 청산방식의 결제를 하자는데 의견이 접근되고 있는바, 남북간의 개별적인 물자교류가 청산계정으로 처리되려면 그 거래에 대한 쌍방 당국의 승인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청산계정으로 처리될 것으로 믿고 거래한 교역당사자들에게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물자교류의 경우에도 그러하지만 특히 경제협력사업의 경우, 이에 참여할 당사자는 관련분야에 대한 사업경험과 시설 및 자금동원 능력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남북 당국의 심사·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레야만 사업수행 능력이 미흡한 자가 참여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계약불이행 등 분쟁발생과 상호신뢰의 저하를 막고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이 원만하게 발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귀측의 『제품 대 제품, 원료 대 원료』교환원칙은 현 남북 물자교류 구조에 비추어 볼 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측이 제의한 『경제사무소 및 경제상담소』문제에 대해서는 두가지 다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 귀측 입장을 고려하여 경제사무소 설치문제는 추후에 협의키로 하되, 우선 경제상담소만이라도 설치·운영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다음 사회문화분야에서 쌍방은 대부분의 문제에서 의견일치 내지 접근을 보였습니다.

교류·협력의 지원·보장을 비롯하여 성과와 경험, 정보·자료의 교환, 공동연구, 조사, 편찬사업, 전시회, 관련 기관·단체 및 인원간 교류·협력 그

리고 저작권 보호와 대외 공동진출 문제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견해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측안이 교류·협력의 구체성과 실천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비해 귀측안은 그렇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교류대상과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그 실천이 가능하고 공동위원회에서의 협의도 용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측안을 고려하고 쌍방안을 보다 접근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세항을 대폭 통합·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통행·통신분야에서 쌍방은 육로·해로·항로 개설구간과 임시교통로 개설을 비롯하여 교통로 개설을 위한 정보교환과 기술협력, 판문점을 통한 인적왕래와 우편물교환, 왕래자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 보장 및 긴급구제 조치 그리고 우편물교환실, 전화교환실 설치문제 등에 의견 접근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으로 남아 있는 것은 한쪽안에만 포함되어 있는 일부 조항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측안 중 『우편물 수집·전달방법』 『우편·전기통신의 종류, 요금결정』문제 등은 귀측의 주장을 고려하여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귀측이 주장하고 있는 『각계각층 인원들간의 왕래』문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표현이 적합치 않으므로 남북기본합의서 제 17조에 명시된대로 『민족구성원간의 왕래』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법적·제도적 장치 철폐』주장 역시 상대방의 체제존중과 내부문제

불간섭을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부합되지 않으며, 앞으로 남북 인적왕래와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제기된다면 그것은 정치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이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시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기로 약속한 마당에 도로와 철도의 연결문제를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문제와 연관시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귀측이 이들 조항을 전향적으로 조정하여 통행·통신에 관한 합의의 이룩하기를 기대합니다.

쌍방 입장에 큰 차이를 나타내고 아무런 진전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가 이산가족 문제입니다.

이산가족 문제해결의 주체는 남북기본합의서 제18조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남북의 당국입니다.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고 남북이 화해·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려는 마당에 이산가족 문제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상징적인 문제이며 책임있는 당국이 직접 나서서 서둘러 해결해야 할 긴급과제인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측 부속합의서안에는 과거 적십자회담때 귀측이 주장한 내용들이 대폭 수용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귀측은 이산가족 문제해결을 적십자단체에 넘길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문제의 절박성을 고려할 때 이 문제를 놓고 시간을 더 이상 끌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토론보다 행동에 옮김으로써 이산가족들의 피맺힌 한을 풀어주고 눈물을 씻어주어야 합니다.

나는 남북기본합의서에 충실하고 또한 귀측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한 입장에서 절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산가족 문제에 관한 해결대책은 쌍방 당국이 마련하고, 그 이행과 관련된 사항은 쌍방 적십자단체가 담당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도 합의와 실천이 쉬운 분야부터 우선 착수하자는 것입니다.

나는 이 방법만이 20여년 동안 끌어온 이산가족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상과 같은 견지에서 나는 부속합의서 차이점을 조정하기 위한 새로운 수정안을 제의코자 합니다.

먼저 「남북 사이의 경제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 제2차 수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남북 사이의 경제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안)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상호 보완과 호혜의 원칙에서 물자교류, 자원의 공동개발, 투자, 관광, 과학·기술, 보건, 환경 등 경제분야에서의 교류·협력 및 대외공동진출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물자교류와 경제협력사업

제 1 조 남과 북은 물자교류 및 쌍방 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업, 광업, 농업, 어업, 건설, 운수, 전력, 통신, 관광 등 각 분야에서의 공동개발, 투자 등의 경제협력사업을 지원·보장한다.

제 2 조 경제분야에서의 교류·협력당사자는 자기측 당국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하며, 교류·협력당사자는 당해 사업에 대해 각기 자기측의 필요한 절차를 거쳐 당사자간에 직접 체결된 계약에 의해 물자교류와 경제협력 사업을 시행한다.

제 3 조 물자교류의 대상품목, 교류규모는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품목별 수량은 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교류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정한다.

제 4 조 교류물자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을 고려하여 물자교류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 5 조 교류물자는 남과 북이 합의하여 정한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하여 직접 수송하도록 한다.

제 6 조 남과 북은 경제의 각 분야에서 제3국 공동진출,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를 통한 경제협력사업 등의 대외경제협력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제 7 조 남북 사이의 물자교류와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 2 장 과학·기술, 보건, 환경분야 교류·협력

제 8 조 남과 북은 정보자료의 교환, 대학·연구기관·개인간 공동연구 및 조사, 산업부문의 기술협력, 전문가의 상호교류, 환경보전대책의 공동강구 등을 통한 과학·기술, 보건, 환경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제 9 조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특허권, 상표권 등 상대측의 과학·기술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보건, 환경분야의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 등에서의 협력과 대외공동진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 3 장 경제분야 교류·협력 지원

제11조 남과 북은 교류물자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남북간의 경제관계를 민족내부관계로 정착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협의·추진한다.

제12조 남북 사이의 물자교류에 따른 대금결제는 청산결제 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포함하여 남북 사이의 교류·협력에 따른 대금결제 및 자본의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에 종사하는 인원에 대하여 사업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의 자유와 편의를 보장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자료, 통계 및 통계기준과 공업규격 등을 상호 교환하며,

교류·협력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자기측 관련법규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제15조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지원·촉진하기 위하여 관문점에 경제상담소를 설치·운영한다.

제 4 장 이행기구 및 수정·발효

제16조 이 합의서의 이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

제17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18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월 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 석 대 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측대표단 단 장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목

또한 나는 「남북 사이의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 제2차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의합니다.

남북 사이의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안)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상호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고 민족공동체를 회복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 문학·예술, 체육, 출판·보도 등 사회문화분야에서의 교류·협력과 대외공동진출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제 2 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에서 이룩한 학문적 성과와 경험, 연구자료, 출판·보도자료와 목록, 방송 프로그램 등 여러 분야의 정보·자료를 상호 교환한다.

제 3 조 남과 북은 국토순례, 수학여행, 친선방문, 취재활동 등을 통한 학생, 교직원, 작가, 예술인, 체육인, 언론인, 종교인, 학자, 전문가 및 종사자 등 사회문화분야의 관련 인원간의 상호 교류를 실시한다.

제 4 조 남과 북은 인문, 사회, 자연과학과 민족문화유산을 비롯한 사회문화분야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행하는 연구, 학술조사, 편찬사업 및 학술목적의 행사와 예술작품, 문화유물, 도서출판물의 교환전시를 실시한다.

제 5 조 남과 북은 남북 공동기념일과 민족명절에 문화예술단을 상호 교환하며 체육경기대회 공동개최, 쌍방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의 상호 초청·참관, 대표단 파견 등 사회문화분야에서 다각적인 협력을 실시한다.

제 6 조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체육과 신문, 방송, 통신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사회문화분야의 관련기관과 단체간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 7 조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체육, 출판·보도 등 사회문화분야의 국제기구와 국제행사에서 서로 협력하며 국제경기대회 단일팀 참가 등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제 8 조 남과 북은 상대측의 출판, 연극, 음악, 미술, 건축, 사진, 영상저작물 등에 대한 권리를 상호 보호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 9 조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원활한 정보·자료의 교환을 위해 판문점에 자료교환실을 설치·운영한다.

제10조 이 합의서의 이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

제11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12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월 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 석 대 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측대표단 단 장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목

또한 나는 「남북 사이의 통행·통신에 관한 부속합의서」 제2차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의합니다.

남북 사이의 통행·통신에 관한 부속합의서(안)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하고,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하며, 남북 사이의 우편과 전기통신교류

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의 자유로운 왕래·접촉과 교류물자의 원활한 수송 및 우편과 전기통신교류를 지원·보장한다.

제 2 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의 자유로운 왕래와 교류물자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필요한 육로, 해로, 항로를 개설하고 통과지점을 지정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을 실시한다.

- ① 육로는 우선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간 도로를 연결하며 장단과 판문점을 통과지점으로 한다.
- ② 해로는 인천항과 남포항, 포항항과 원산항을 연결하여 개설한다.
- ③ 항로는 서울 김포공항과 평양 순안비행장간을 연결하여 개설한다.
- ④ 육로, 해로, 항로는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추가로 연결하여 개설한다.

제 3 조 남과 북은 교통로가 연결되기 이전에 진행되는 왕래와 물자교류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임시교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제 4 조 남과 북을 왕래하는 자는 쌍방 당국이 허가한 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일정한 범위내에서 왕래에 필요한 물품과 현금을 휴대할 수 있다.

제 5 조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오는 인원과 교류물자에 대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상대측 교통수단의 운영을 허가할 수 있다.

제 6 조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을 방문하고 있는 자의 방문 목적 수행을 위한 자유로운 활동과 신변안전 및 무사귀환을 보장하며, 상대측 지역을 방문하는 자는 상대측의 질서와 안내에 따른다.

제 7 조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인원, 교통수단 등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 구제조치를 취한다.

제 8 조 남북 사이에 교류되는 우편물 및 전기통신의 종류와 요금, 우편물의 수집·전달방법, 교환횟수 등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 9 조 남북 사이에 교류되는 우편물과 전기통신은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의 우편물교환실과 전화교환실을 통하여 교환·연결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남북 사이에 교류되는 우편과 전기통신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정치적·군사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제11조 남과 북은 공적 사업과 남북간에 합의된 교류·협력에 필요한 우편과 전기통신교류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며 점차 그 이용범위를 넓힌다.

제12조 남과 북은 상대측 주민이 우편과 전기통신교류를 위해 자기측 주민의 주소, 전화번호 등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통행 및 우편·전기통신교류에 관한 국제협약을 존중한다.

제14조 이 합의서의 이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통행·통신공동위원회에서 한다.

제1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1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월 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 석 대 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측대표단 단 장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목

또한 나는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재회와 기타 인도적 문제 해결에 관한 부속합의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의합니다.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재회와
기타 인도적 문제 해결에 관한 부속합의서(안)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18조 규정에 따라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이하 「이산가족」이라고 한다)들에게 조속히 재회의 길을 마련해 주고, 기타 인도적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이산가족들의 범위는 가족의 경우는 흩어질 당시의 가족과 그후 출생한 자손으로 하고, 친척의 경우는 방계에서 8촌, 처가와 외가로는 4촌으로 한다.

제 2 조 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의 서신거래를 관문점에 설치·운영되는 남북연락사무소의 우편물교환실을 통해 우선적으로 실현하도록 하며, 전기통신 수단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 3 조 남과 북은 관문점에 면회소를 설치하여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실현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다른 지역에도 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하여 상봉하게 할 수 있다.

제 4 조 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의 자유왕래와 방문을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왕래절차에 따라 실시하고, 왕래자들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

하며 편의를 제공한다.

제 5 조 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이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그들이 원하는 곳에서 재결합하여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제 6 조 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방문 이전이라도 쌍방이 합의하여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교환을 실시한다.

제 7 조 남과 북은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에 입각하여 상대측 지역에 자연재해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서로 도우며, 이산가족 가운데 사망자의 유품처리, 유골이전 등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 8 조 이산가족들의 주소와 생사확인 및 이 합의서의 이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쌍방 적십자단체들의 주관하에 하도록 한다.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이내에 남북적십자회담이 재개되도록 적극 협조한다.

제 9 조 남북적십자회담의 쌍방 책임자들은 적십자회담에서의 협의결과를 남북고위급회담에 보고해야 한다.

제10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11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월 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 석 대 표	북측대표단 단 장
대 한 민 국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묵

둘째로 오늘 우리가 협의·결정해야할 일이 부속합의서의 형식문제입니다.

귀측도 아는 바와 같이 남북기본합의서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는 그 사업성격상 비교적 독립성을 지니고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타조항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독립성을 지닌 조항은 거기에 해당되는 합의를 채택하되 상호연관이 있는 조항들의 사업은 같은 것끼리 묶어서 그 실천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사업실천 단계에서 중복을 피하면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위원회마다 각기 독립적인 부속합의서를 갖도록 부속합의서를 공동위원회 수와 맞추어 작성하는 것이 공동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같은 견지에서 우리측이 제시한 4개의 부속합의서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편 귀측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까지 부속합의서 채택을 완료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합의서의 체제가 복잡하지 않은 포괄적인 단일합의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측은 쟁방간에 이산가족 문제를 제외한 여타 분야에서 이미 의견접근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 비추어 시간의 촉박성이라는 이유로 포괄적 단일합의서로 작성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와 부문

별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발효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합의서의 내용을 얼마만큼 충실하게 채우느냐 하는데 있습니다. 쌍방은 의견이 일치하거나 유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4개의 부속합의서로 묶어 제7차 고위급회담에서 채택토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쌍방간에 의견차이로 인해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일부내용이나 현재로서는 예견치 못한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앞으로도 계속 협의·절충하여 부속합의서를 수정하거나 추가·보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와 관련하여 교류·협력분과위원회의 기능과 쌍방이 제시한 부속합의서 안에 수정·보충조항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바입니다.

나는 이와 같은 축차적 합의방식에 의한 부속합의서의 보완·발전 원칙을 귀측에서도 잘 이해하시고 동의하리라고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협의·결정해야 할 일은 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 문제입니다.

공동위원회 수에 있어서 우리측은 인도, 통행·통신, 경제, 사회문화의 4개로 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이산가족 문제에 관한 구체적 해결대책은 쌍방 당국이 마련하되, 그 이행은 쌍방 적십자단체에 위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통행·통신공동위원회를 독립적으로 둘 것인가 하는 문제만 남게 되는데 통행·통신공동위원회는 모든 교류·협력의 기반이며 그 사업성격이 갖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로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공동위원회의 구성면에서 우리는 귀측의 의견을 수용하여 9명으로

구성하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기능과 관련하여 귀측은 『부속합의서를 실천하기 위한 대책의 토의결정』 및 『부속합의서 이외에 교류·협력 진행시 제기되는 문제협의와 실행대책 토의결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측안대로 『부속합의서를 실천하기 위한 대책의 토의결정』으로 표시할 경우, 공동위원회가 자칫 협의기구와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부속합의서의 이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 교류·협력분과위원회가 앞으로도 부속합의서를 추가·보충해 나가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부속합의서 이외에 교류·협력진행시 제기되는 문제협의와 실행대책 토의결정』은 응당 분과위원회의 소관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공동위원회 기능은 남북기본합의서 규정에 맞고 분과위원회 기능과 중복을 피하는 방향에서 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동위원회 합의사항 발효와 관련하여 우리는 귀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쌍방 공동위원장의 서명으로 처리하되 이를 고위급회담에 보고하도록 하고 중요한 합의문건은 쌍방 총리가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동위원회가 남북고위급회담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귀측은 1년에 3회 정도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로서는 최소한 4회는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에서 나는 「남북 부문별 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남북 부문별 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안)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22조에 따라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시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통행·통신공동위원회,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 1 조 각 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각 공동위원회는 쌍방 각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쌍방이 합의하여 증감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쌍방이 합의하여 장관급(부장급) 또는 차관급(부부장급)으로 하며, 부위원장과 위원은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 ③ 쌍방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이를 통보한다.
- ④ 수행원은 15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⑤ 각 공동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협의·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 2 조 각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각 공동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에서 작성한 해당부문 부속합의서의 이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협의·실천한다.
- ② 각 공동위원회는 해당부문 부속합의서의 실천방안을 협의한데 따라 사안별로 세부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 ③ 각 공동위원회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활동을 종합·조정한다.

제 3 조 각 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각 공동위원회 회의는 3개월마다 5일 이내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각 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과 서울·평양 그리고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 ③ 각 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공개로 할 수도 있다.
- ④ 각 공동위원회 회의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교류·협력당사자, 전문가 등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각 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해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 ⑥ 각 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 4 조 각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에서의 협의결과를 남북고위급회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조 각 공동위원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쌍방 공동위원장이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는 중요한 문건은 쌍방 총리가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합의문건을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교환하는 방식으로 발효시켰을 경우에는 이를 남북고위급회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 7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월 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 석 대 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측대표단 단 장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목

끝으로 나는 우리측이 긴급과제로 제시한 「남북고령이산가족 고향방문단」 교환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북 쌍방이 지난 2월 19일 발효시킨 남북기본합의서는 민족적 화해와 협력을 그 기본철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합의서가 발효된 오늘 7천만 겨레는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로 발전되리라는 희망을 갖고 활발한 교류·협력 등 가시적 성과가 하루속히 우리앞에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운 혈육을 지척에 두고도 생사, 주소조차 모른채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는 고령이산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더 말할나위없는 절박한 심정을 갖고 상봉의 날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책임있는 우리 쌍방 당국은 민족화해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그리고 교류·협력의 시범사업으로 「고령이산가족 고향방문단」 교환사업을 실시하여 겨레의 뜨거운 염원에 부응하고 다각적인 교류·협력추진 등 실질적인 남북관계의 개선에도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귀측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김정우) : 수고했습니다. 한시간 가까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임선생이 말한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제 의견을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임선생은 유감스럽다, 서로 타협하고 이해하고 양보하자, 초행길이니 그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물론 우리 1차 분과위원회때 쌍방 위원장들이 토론·합의한 것처럼 부속합의서 내용토의를 서로 타협하고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본발언에서 강조한 것은 3차례에 걸쳐 위원접촉을 했는데, 또 우리 위원장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까지 과업을 주었는데, 이게 좋은 결과를 못거두었다. 그 원인이 무엇이나? 이것을 내가 분석을 했습니다.

기본발언에서 다 말했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2차례의 수정안을 가지고 나와서 13개 조항이나 추가하고 그쪽의 7개 조

항의 것도 받아들여서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부분을 그쪽안을 감안해서 내용을 접근을 시켰지만, 그쪽 위원들은 한번밖에 수정안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위원접촉에 나오면서 심지어는 우리가 1차 분과위원회때 넘겨준 초안도 가지고 오지 않아서 회담장에서 그 초안을 찾는 일이 있었는가 하면, 또 우리가 이미 그쪽안을 받아들인 것을 그쪽에서 우리쪽안을 받아들였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도 있는 것을 보아서 연구와 해결의 정신이 부족했다, 이런 보고를 내가 받고 오늘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 그쪽에서 위원들이 지난 기간에 진행한 사업정형에 대해서 나는 많은 전진이 있었기 때문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게 첫째 저의 견해입니다. 위원들한테 과업 준 걸 실행 못해서 다시 위원장들에게 회담이 지금 넘어왔기 때문에 제대로 일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거 앞으로 이렇게 해서 안되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석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사고를 자기 식대로 자기 머리대로 해서 안되겠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언제나 지금까지 항상 사고를 자기 머리로, 자기 사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재고 평가하는데 습관이 돼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처럼 남의 말을 듣고 남의 머리로 사고하는데 습관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위원접촉 평가도 우리는 우리의 그런 사고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분석 평가하는 것은 자기 사업의 취미라는 것을, 앞으로도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쪽에서 이제 부속합의서 내용 차이점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형식을 토론하고 공동위원회 문제를 토론하고 긴급과제를 토론하자, 이렇게 오늘 분과위원회 의제문제를 제기했는데, 반대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선 부속합의서 내용을 토론하되, 기본합의서에 준해서 또 위원들 사이에 합의한대로 15조부터 이렇게 부속합의서 내용토론을 내려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쪽에서 다시금 4개의 부속합의서 수정안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토론에서 아마 좀 난관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 접촉에서 어떻게 합의했는가 하면, 부속합의서 내용을 토론하되 15조부터 기본합의서 순서대로 15조 토론하고 16조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야겠다. 이렇게 하고 3차 위원 접촉을 하다가 이제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위원들이 못한 일을 우리가 하는 만큼 이 원칙을 준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분야에 걸쳐서 그쪽에서 수정안을 내놓았는데 다 행스럽게도 우리안을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전진적인 립장에서 수정안이 나왔다고 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근본문제에서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경제협력문제, 여기서 당국승인문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받아들일 수 없느냐? 이것은 그저 시간상 관계로 간단단단히 주요 요점만 언급하겠습니다.

첫째로 협력·교류를 당국이 승인하게 되면 당국이 정략적 목적에 이용할 수 있다. 두번째로 자유로운 협력·교류를 억제한다. 창구를 일원화한다. 1차 회담때 임위원장은 내가 창구를 일원화하는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기본발언에서 평하니까, 창구일원화를 하자는게 아니다, 이게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자유롭게 하자는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실지로 놓고 보게 되면 당국승인이 창구일원화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1985년도 경제회담때, 1차 회담때 그쪽 수석위원이 발언한 내용을 다시 한번 뒤져 보십시오. 그쪽에서 어떻게 했는가? 우선 당국승인제로 해서 창구를 일원화하고 점차 다원화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회담에 제기되었던 문제를 다시 그쪽에서 당국승인제로 제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엄연하게 창구일원화를 목적으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걸 논합니다.

다음 우리 경제협력·교류가 기본합의서 서론에 명기된대로 『통일 3대원칙에 의해서 평화통일을 이룩할 것을 약속하면서』, 또 3장 협력·교류의 15조에 명기된대로 『민족내부 교류로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국제관례에도 없는 이런 당국승인제를 해서는 안되겠다.

왜 국제관례에 이것이 없는가? 한가지 실례를 들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북남이 이제 부속합의서를 맺고 공동위원회에서 우리 북쪽지역에 있는 광산 하나 개발하는 문제를 이제 합의를 했다 합시다. 그렇게 되면 광산개발을 위해서 북한의 상회사들이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남쪽에 있는 대우회사나 현대회사나 삼성회사나 선경이나 효성이나 좌우간 모든 회사들이 우리나라 탄광개발에 좋은 기술조건과 좋은 지불조건과 좋은 가격을 가지고 참가할 것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러 회사들이 여기에 참가를 해서 합의해다가 그 선정하는 것은 우리

가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당국에서 선경을 하라, 대우는 하지 말라, 효성 하지 말라, 이래 놓으면 그것은 국제경제관례에 모순됩니다. 국제적으로 입찰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상식에 없는 이와 같은 것을, 국제관례에도 없는 것을 민족내부 교류로 해서 만들어서 창구일원화하지 말라. 이것 그 어느 때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그쪽에서 창구일원화가 아니라는 것은 85년도 1차 경제회담때 그쪽 수석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녹음테이프와 그 다음에 해당하는 문건이 다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다른 말로도 우리를 다르게 리해시킬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북남 서울과 평양에 사무소 설치를 철회한 문제는 아주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상담소문제입니다. 상담소문제는 앞으로 북남의 경제인들이 실지로 상담소가 필요할 때는 그때 가서 보자.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지금 북남경제인들, 재계인들이 경제협력과 교류를 하는데 있어서 상담소가 판문점에 필요한지, 아니면 실지로 토의되는 장소에서 상담이 필요한지, 이것은 이제 두고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견은 무엇인가? 공동위원회에서 이것을 토론하면, 공동위원회에서 이제 운영하다가 협조하다가 필요한 때가 되면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가보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부터 판문점이다, 이것 불필요합니다. 레하면 그쪽 현대회사가 우리 청진지역에 와서 무엇을 하다가 상담할 필요가 있으면 청진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회사들을 위해서 필요해서 어디라도 두자 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 둘 수도 있

는 거고... 그래서 상담소문제는 공동위에서 토론하자, 이것이 우리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문화분야에서의 문제입니다. 이 사회문화분야에서는 그 쪽에서 근본자세와 입장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나는 기본발언에서도 언급했지만 그쪽에서 사회문화분야의 부속합의서에다가 어떤 서론을 넣었는가? 『민족공동체를 회복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이것을 전제로 합니다.

임동원선생, 북남고위급회담 예비회담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논의했는가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습니까? 아마 선생은 나보다 회담을 더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경제부문이라든가 통행·통신부문이라든가 인도분야, 이런데선 이런 표현을 안 쓰면서 사회문화분야에서는 이런 표현을 목적으로 놓고 아래다 토론을 시작하는가? 이 글은 지금 무슨 것을 하자고 하는건가?

그쪽은 1차 회담 기본발언에서 『동질성 회복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하고 초안을 한번 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조금 전진해서 『민족공동체를 회복 발전시키자.』 하고 바꿔 내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 문장을 그대로 냈습니다. 그러면 북남인민들한테 과연 이것 남쪽에서 이 사회문화부문 교류를 어디다 써먹으려고 내놨는가? 이게 명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쪽 이 문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임동원선생이 협력·교류분과를 가만보니 통일지향적인 자세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치적인 그와 같은 목적에 리용을 하지 않는가? 왜 1989년 147회

국회 연설에서 그쪽 최고 당국자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라는 것을 내놨고, 그걸 통일시책으로 하면서 과도적 단계, 단계적 통일을 논했습니다. 그렇게하고 지금까지 고위급회담 과정을 놓고 보면 그쪽에는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협력·교류에는 관심을 두면서 하자고 나오면서도 바로 이런 목적을 공공연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협력·교류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자는 건가? 우리는 기본합의서에 준해서, 또 고위급회담의 의제에 맞추어서... 고위급회담 의제가 뭐니까?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며,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를 실시할데 대하여... 1차부터 2차까지 고위급회담 논쟁된게 우리가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하고, 그쪽에서 내놓은 3통협정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차 회담에서 우리가 병진시키자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고위급회담 역사를 돌이켜 보시오. 그건 병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쪽에서는 지금 정치·군사분과위원회는 제대로 운용하지 않으면서, 부속합의서도 똑똑히 내놓지 않으면서, 협력·교류분과위원회는 부속합의서를 4개, 공동위 합의를 4개를 내놓으면서, 서문에다가 사회문화분야 이런 목적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철회하기 전에는 사회문화부문의 그러한 토의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입장을 명백히해 둡니다.

그 다음에 사회문화부문 토론을 앞으로 할 때도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래왕에 저촉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철폐하는 문제, 이것은 그 어느

때든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는 걸 명백히해 둡니다. 왜냐하면 자유래왕을 하자고 하게 되면, 자유래왕을 저촉하는 복남에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철회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쪽에서 국가보안법 없애야 됩니다. 국가보안법 1조부터 8조, 형법 1조 3조 들여다 보시오. 지금 어떤 조항들이 있는가? 래왕하고 하는 사람 감옥에 다 잡아넣게끔 법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이것이 우리 요구만 아니지 않습니까? 그쪽의 정치인, 그쪽의 인민들이 합의서가 채택된 이후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세를 바로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리산가족문제, 이것은 그쪽에서 적십자회담에 넘기는 것으로 이렇게 결심하고 인도공동위원회까지 철회됐기 때문에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당국회담에서 적십자회담에서 토론할 내용을 다 토론해서 넘기는 것은 의의가 없다고 봅니다.

나는 적십자회담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많이는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적십자회담 회담록을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84년도, 85년도 10차까지 적십자회담을 했는데, 또 그후에 실무대표접촉했고, 여기 있는 송영대선생, 우리 박영수동무 많이 나와 토론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내놓은 안이나 그쪽에서 내놨던 안에서 지금 그쪽에서 당국회담에서 하자고 제기한 내용들이 많이 합의가 됐고, 또 진전이 되던 문제들입니다. 그런 걸 무엇 때문에 구태여 적십자회담에 또 제의하고, 그냥 이미 토론하던데서 시작하면 되겠는데, 당국서 내와서 다시 토론을

시작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그렇게하고 적십자기구의 사명에도 맞지 않는다. 오지리의 수도 원에서 있는 국제적십자대회 20차 대회 결정, 거기서 독립성 조항을 보십시오. 어떻게 돼 있는가? 적십자단체라는 것은 해당 정부의 인권자문기관의 보조적 역할을 하면서도 독자적인 결심과 판단을 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적십자단체가 소관할 문제까지 우리 당국이 소관해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겠는가? 이것은 국제적십자기구의 규약에도 어긋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쪽에서 일단 적십자로 넘기자고 하는 것은 환영하면서, 적십자에서 토론하게 되었던 문제, 또 적십자에서 응당 하게 된 문제를 당국이 거둬안고 토론하는 것은 피하자, 그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부속합의서 형식문제, 그쪽에서는 지금 공동위원회 수에 이숫자를 맞추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하고 합의서를 내는 쪽쪽 분과위원회를 계속 운영하면서 합의서를 맺고 공동위원회에 넘기자, 이런 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동위원회 수는 2개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1차 분과위원회때도 상기시켰지만, 이미 분과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판문점으로 나가는 기차 안에서 그쪽의 임선생과 그 다음에 동복선생하고, 그 다음에 종휘선생하고 나하고 넷이 앉아서 2개로 합의했기 때문에 내가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이제 와서 또 3개다, 4개다 해 가지고는 안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개가 왜 좋은가 하는 것은 먼저번에 말했기 때문에 더 강조 안하겠습니다. 2개로 하자.

그렇게 하고 부속합의서 갯수를 거기다 맞추는 것은 갯수를 안맞추고, 1개의 부속합의서로 하고 절 항 제목으로 가를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우리 의견입니다.

남(임동원)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북(김정우) : 공동위원회는 둘로 하고 부속합의서는 1개로 하고 거기에 절 제목을 달아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임동원) : 절, 절?

북(김정우) : 예, 절 제목을.

남(임동원) : 장별로 하자?

북(김정우) : 예, 장별로... 그런 안도 있다.

남(임동원) : 기본합의서처럼?

북(김정우) : 예, 기본합의서처럼.

남(임동원) : 제1장 경제, 제2장 사회문화... 이런 식으로?

북(김정우) : 예, 그렇지요. 그 다음에 공동위원회 수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선생의 그런 이야기에 이제 좀 몇가지 저희 견해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합시다. 오늘 그쪽에서 수정안을 내왔기 때문에 우리가 좀 연구를 하고, 그렇게하고 다음에 만나서 토론합시다. 오늘 오전 시간도 다 갔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수정안을 내왔으니까, 아마 수정안에 대한 저희 의견을 가서 연구하고, 다음번에 회담을 하게 되면 합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앉아서 서로 토론해야 또 갑론을박 하면서 시간을 그저 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남(임동원) : 다음 회의를 하자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왕에 이야기가 나왔던 거니까... 지금 딱 2주 남았죠?

북(김정우) : 다음 3차 분과위원회를 4월 27일날 가집시다. 그렇게 하고 분과위원회에서 오늘 그쪽에서 내놓은 수정안, 내가 또 이야기한 안, 다 쌍방이 거론해서 토론하고 그 다음 문제는 3차 분과위원회에서 토론합시다.

남(임동원) : 월요일인가요?

북(김정우) : 예.

남(임동원) : 그러면 그동안에 위원접촉도 안하고?

북(김정우) : 위원접촉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그동안에 위원들이, 그쪽에서는 많이 평가를 했는데, 나는 제 구실을 못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좀 인색하게 평가를 하면... 임동원선생이...

남(김인호) : (웃음) 김정우위원장이 보기보다 상당히 인색하신 분이구만. 우리 위원장께서는 그렇게...

남(임동원) : 기준이 너무 높으신데...(웃음)

북(손종철) : 요구성이 높아야 빨리 나간다 이거죠.

북(김정우) : 나는 원래 사업할 때도 요구성이 높아서 좀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차 고위급회담이 날짜가 정해졌기 때문에 요구성을 높이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렇게 이제 위원접촉이 되지 않아서 위원장접촉으로 올렸는데, 다시 위원장들이 위원들에게 내리미는 것은... 우리한테선 그런 말이 있어요. 아래서 위로 밀고, 위에서 아래로 미는 건 금물이다. 이걸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일단 올려 밀었으면 위원장들이

제끼자.

남(임동원) : 내가 좀 이야기를 하지요. 우선 맨뒤에 지금 나왔던 문제부터 이야기합시다. 만일 7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5월 5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회담에서 부속합의서를 합의하고 공동위원회에 관한 합의서도 합의를 보려면 2주밖에 안남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분과위원회 제 3차 회의 한번 만나 가지고 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문안정리는 언제 하고, 나머지 것은 언제 할 수 있다고 봅니까? 난 그것이 이해가 안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남북간의 대표접촉도 하고 회의를 해봤지만, 문안정리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지?

나는 그래서 의심스러운 것이, 귀측에서 안하려고 그러는가 하는 생각이 우선 들어요.

북(김정우) : 아, 그건 임선생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남(임동원) : 하려면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북(김정우) : 나는 임선생이 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할 때처럼, 또 조선반도의 비핵화 공동선언을 할 때처럼 그렇게 12월 31일까지 정력적으로 하던 그런 본때로 하면, 27일 이것도 날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내가 이제 말한 것처럼 그런 시각의 차원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협력·교류를 하자는 자세에서만 나온다면 27일 이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남(임동원) : 자꾸 조건 붙여서 조건부로 하지 말고 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내용을 이야기하자 이거예요.

북(김정우) : 할 의사가 있지요, 예.

남(임동원) : 서울회담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북(김정우) : 예, 통과시키려고 그렇습니다.

남(임동원) : 확실히 그렇습니까?

북(김정우) : 그렇습니다.

남(임동원) : 그러면 다음 분과위원회 한번 열어서 그것이 되리라고 봅니까?

북(김정우) : 분과위원회 한번 열어서 안되게 되면 더 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문안정리가 필요하면... 4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날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말하자면 출발점은...

남(임동원) : 그때부터 문안정리에 들어가서 5월 5일때 위원장간에 가서 명하자, 이런 생각입니까?

북(김정우) : 예.

남(임동원) : 그러면 그렇다고 진작 이야기해 주어야지. 다음번 분과위원회가 마지막인데 더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3차 분과위원회가 7차 고위급 회담 이전의 마지막 회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북(김정우) : 그건 3차때 가서 또 토론해 봐야죠.

남(임동원) : 점점 복잡하게 이야기하네.

북(김정우) : (웃음) 복잡할게 하나도 없는데...

남(임동원) : (웃음) 글썄 머리가 좋지 않아 가지고. 나는 또 내 잣대로 재니까...

북(김정우) : 항상 자기 머리로 사고해야 합니다. 남의 머리로 사고하면 그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27일 분과위원회를 열고 제3차 분과위원회에서 토론하자. 그때에 어떤 자세와 립장에서 나오는가? 내 아까 군사·정치도 말했는데 임선생이 통일원 차관으로 나는 고위급회담 대표로서 한가지 권고하고 싶은 것은 왜 그쪽에서는 정치·군사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까?

남(임동원) : 왜 관심이 없어요?

북(김정우) : 왜 그 부속합의서 아직 하나도 만나왔어요?

남(임동원) : 아, 이제 보세요. 부속합의서도 다 나올 것이고 그런데...

북(김정우) : 왜 이렇게 절름발이 회담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임동원) :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지요. 남북간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대한 상당한 오해가 있고, 또 기본합의서와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세계 분과위원회의 성격들이 다 다르다고 생각돼요. 또 그렇게 합의서에 합의해 놓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세계 분과위원회가 성격이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합의서에 의하면 교류·협력분과위원회에 관해서는 이러저러한 분야의 일들을 하고,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들」자를 제가 집어넣은 것 입니다. —「들」을 낸다 할 때 많은 토의를 했지요. 통행공동위원회, 통신공동위원회를 우리가 다 별도로 내자고 주장했던 것 다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개 공동위원회들을 내는데, 3개월 이내에 발족시키도록 한다. 그리고 이것이 되기 위해선 부속합의서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 교류·협력분과위원회에서는 명백합니다.

군사분과위원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군사공동위원회를 내기로 하면서 군사공동위원회가 하여야 할 기능을 다섯가지로 아주 정해 놓았어요. 오랜 시간 토의 끝에 그렇게 합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공동위원회는 거기에 적혀 있는 기능을 가지고서 당장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부속합의서를 한다, 안한다 합의해 놓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부속합의서가 되지 않으면 군사공동위원회를 발족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니까 거기에서 견해차이가 생기는 것이예요.

정치분과위원회, 정치분과위원회에서 공동위원회 낸다는 말은 합의본 조항이 없어요. 그러나 남북 양측이 어떤 공동위원회들이 필요하리라는 것은 서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해 놓지 않았어요. 따라서 북측이 주장하는 정치공동위원회를 이번 7차 고위급회담까지 발족시켜야 되며, 그러기 위해선 부속합의서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앞으로 있을 수 있다, 필요할 수도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선 같지만, 어느 시한까지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달라요.

기본합의서,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보세요. 제가 직접 기안에 참여하고 구절을 외우다시피 하고 토론을 많이 해서 다 알고 있지만, 왜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느냐, 그것이 의문스러운 거예요. 또 그쪽에서는 왜 자기측대로 우리가 해석을 못하느냐, 그것이 의문스럽겠지. 그런 것은 서로 싸우지 말고 잘 협의해서 해결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북(김정우) : 아니 임선생, 가만 있으세요. 내 그 문제를 명백히 해두겠어요. 북남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2조 2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각 분과위원회는 북남 사이의 화해와 불가

침 및 협력·교류에 관한 합의서의 해당부분의 구체적인 리행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각각 부속합의서를 작성한다.』

이것이 뭣인가? 정치분과위원회, 군사분과위원회, 협력·교류분과위원회에서 각각 부속합의서를 작성한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협력·교류분과위에서는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자고 해서 4개를 그쪽에서 내놓았는데, 왜 정치와 군사에서는 아직도 두차례나 접촉하고도 부속합의서 초안을 안 내놓느냐?

남(임동원) : 그건 내가 이야기해 줄게요.

북(김정우) : 이렇게 절름발이 회담을 하는 저의에 무엇이 있는가? 그쪽에서 말하는 것을 내 가만히 보면,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합의서를 리행하고자 해서 우리가 지금 회담하는 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임선생이나 내가 고위급회담 전반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의 의도가 이렇다는 것을 알고 그쪽에서 빨리 자기의 립장을 수정해서 군사·정치에도 합의서 의무대로 부속합의서를 가지고 나와서 성실히 토론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협력·교류가 됩니다.

남(임동원) : 이보세요. 이제 인용한 조항은 맞는 조항이에요. 그래서 부속합의서를 하는데, 그것을 삼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는 것이 있어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속합의서안을 다 만들어 가지고 있어요, 정치분과위원회도. 그러나...

북(김정우) : 아니 임선생, 경제협력·교류분과위원회도 3개월 이내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남(임동원) : 공동위원회를 발족시키는 것은 3개월 이내로 하게 되어 있잖

아요?

북(김정우) : 아, 공동위원회야 다른 것도 공동위원회를 해야죠.

남(임동원) : 어디에 정치공동위원회를 3개월 이내에 발족하라고 되어 있어요?

북(김정우) : 그러니까 그쪽에서 정치·군사는, 특히 군사공동위원회는 7차에서 안하겠다 그 말씀이죠?

남(임동원) : 왜,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합의에 의해서...

북(김정우) : 그러니까 목적을 명백히 해야지.

남(임동원) : 그러나 기본합의서에서 명백히 양측이 합의한 것, 기본합의서에서 합의된대로 하자는 것이 귀측 주장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대로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합의서에 그렇게 합의되지 않은 것은 시간을 가지고 발전시켜야 될 문제예요. 어떻게 합의가 안되었는데도 그것을 교류·협력분과위원회에 준용해서 정치공동위원회도 3개월 이내에 발족시키자는 것은 귀측의 주장이고 해석이지, 합의된 사항이 아니잖나 이거야. 우리 것은 합의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지.

북(김정우) : 그렇다면 통일원 차관으로서 임선생이 지금 분과위원회에 대하는 자세와 립장이 명백해집니다. 협력·교류분과위원회 사업 자체가 실제로 고위급회담의 의제에 맞게끔 진행 못된다는 것을 명백히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그쪽에서 다시 한번 자기의 립장과 자세를 검토해야 됩니다. 오늘 회답은 이만합시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남(임동원) : 가만있어요. 자기 이야기만 하고 그만두면 어떻게 해? 나도

이제 이야기해야지.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점중의 하나가 그것이에요.
저도 이야기를 해야...

북(김정우) : 무슨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면 빨리 말씀하세요.

남(임동원) : 오늘 회의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다 이야기해놓고 나는 이야기할 시간도 안주고 끝내자는 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쪽의 자세가 좀 이상하다 이거야. 기초발언문에 다 뒤집어 씌우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야.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이 듭니다. 그러면 안되죠.

그리고 지금 오해를 풀고 신뢰를 구축하여야 할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 자꾸 오해에 오해, 불신에 불신을 쌓이게 해서 는 되겠느냐 이거야. 교류분과위원회만이라도 그렇게 안되도록 모범을 보여야죠. 아까 자기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북(김정우) : 통일지향적으로...

남(임동원) : 예, 통일지향적으로.

북(김정우) : 분열지향적이 아니라...

남(임동원) : 물론이죠. 그런데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는 모두 분열지향적인 것으로 보고, 자기 생각은 전부 통일지향적인 것으로 보는 이러한 독선적인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원칙에 따라 해야 한다, 우리의 사고대로만 한다... 혼자서 살 때는 그렇게 해도 좋아요. 자기의 사고대로 하고 자기의 생각하는대로 혼자서 하는 것이 무슨 상관에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하고 협상을 해서 어떠한 합의에 도달하려고 할 때에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리

고 자기의 주장도 양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지난번 제1차 기조연설에서 세계의 기본원칙을 내세우며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강조했겠습니까? 양보와 타협이라는 것은 자기의 사고중에서 일부는 고치겠다, 교류·협력하기 위해서...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 상대방만 양보하라 그런 뜻입니까? 이것이 회담이 잘 진행되지 않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자꾸 의심을 하는 것이에요. 다른 분과위원회는 이렇고 저런데, 다른 분과위원회는 안내놓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다음 3차 회담에서 급진전이 될런지... 남북회담이라는 것이 항상 순조롭게 순풍에 돛을 달고 다닌 적이 있어요? 쌍방간에 늘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이러다가 서로 의지가 있을 때 합의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합의하려고 하면 합의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회의에 임하고, 상대방의 것을 못받겠다 하면 자, 이것을 못받으면 우리로서는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가 하고서 제시하고, 이렇게 절충점을 찾는 것이지, 자기의 사고대로... 그것이 주체성이 아닙니다. 협상에 임하는 자세는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북(김정우) : 임선생, 오늘 회담이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발언을 한 다음에 그쪽에서 논평을 하고, 그 다음에 그쪽 발언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남(임동원) : 논평을 아직 못했죠. 그저 간단히 이야기하고...

북(김정우) : 간단히했건 어쨌건 그쪽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할 차례는 내가 이야기했고, 이제는 그쪽에서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차례가 아닙니다. 그리고...

남(임동원) : 그쪽에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해야죠. 토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북(김정우) : 그리고 전진적인 자세에서 해야지, 그렇게 자꾸 말을 시까불 알가불 하면 안되니까...

남(임동원) : 아니 귀측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죠. 나는 점잖게 했지, 귀측에 대해 험뜯고 한 것이 없어요.

북(김정우) : 임선생,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다언다쳐하다.』 말이 많으면 쓸말이 적어진다는 것이예요.

남(임동원) : 우리가 지금부터 토론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회의하러 왔지, 기초발언하고 헤어지려고 나왔습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북(김정우) : 우리가 그쪽 수정안을 받았으니까...

남(임동원) : 할 의사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가 의문스럽다 이겁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자 이거예요. 그래야...

북(김정우) : 자세는 우리가 더 되어 있는거지. 지금까지 아무런 안을 안내 놓았다가 이제 와서 수정안을 내놓고 자세가 좋다... 그게 무슨 자세가 좋은 겁니까?

남(임동원) : 김선생, 지금 우리가 다음 교류·협력분과위원회 3차 회담에서 합의를 도출하려고 하는 것을 진짜로 하려고 한다면 토론합시다. 이제부터... 이제 기초발언이 끝났어요. 그리고 귀측의 추가적인 의견제시가 있었어요. 이제 내가 말할 차례예요. 그런데 폐회하자는게 어떻게 된 것입

니까? 주최하는 사람이...

북(김정우) : 오전시간은 됐으니까 우리가 그쪽안을 보고...

남(임동원) : 우리가 언제 시간을 맞추어 놓고 회의를 했습니까? 언제 합의했어요? 12시에 끝내자고...

북(김정우) : 대체로 우리가 오전시간을 12시에 정하지 않습니까?

남(임동원) : 어떤 날은 제가 7시간 반까지 회의한 적이 있어요. 그쪽이 하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부터 내가 이야기할게 좀 들어보세요. 토의합시다. 토의 안하겠어요?

북(김정우) : 우리는 이제, 이게 합의가 잘되려고 하면...

남(임동원) : 서로가 오늘 회담이 중요한 회담이라고 처음에 다 그렇게 해 놓고 이게 뭐요? 언행이 일치하지 않잖아요. 나는 이제부터 한시간 정도 토론해 가지고 많은 진전이 이룩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두 시간...

북(김정우) : 임선생, 내 말 들어보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북남대화 역사를 놓고 보아도 말로 해서 진전이 된 적 있습니까? 문제는 그쪽안이 나왔으니까 어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연구를 하고 그쪽안에 대한 우리안을 말했으니까, 그쪽에서 내 말을 가서 연구를 하고 다음번에 또 만나보자 말입니다. 여기 앉아서 서로 자기 주의 주장만 말해야 실제로 진전이 안됩니다. 감정만 나빠지고...

남(임동원) : 아니, 감정 나빠질 건 없죠. 감정과는 관련없는 이야기예요.

북(김정우) : 나는 왜 말했는가? 그쪽에서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 수정안에 대한 우리 견해를 말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또 말하지 말고 돌아가서, 그쪽 수정안에 대한 나의 견해를 이야기했으니까 연구를 하고, 우리가 27일날 만납시다. 이걸 무슨 회담을 안하자는 태도다 이러지 말고, 우린 그저 앉아서 자꾸 말로 하는 것보다 서로 상대방 가지고...

남(임동원) : 오늘 회의가 공개되고 있는 건 알고 있죠?

북(김정우) : 알고 있습니다, 예. 바로 전진적으로 하자고, 그렇게 하죠. 능력적으로 짧은 시간에...

남(임동원) : 우리 겨레에게 이거 무슨 창피한 일입니까? 회의하러 와가지고 일방적으로 연설문만 읽고, 그 다음에는 상대방이 발언하겠다는데 발언도 못하게 막고, 이것 뭐라고 신문에 크게 날 겁니다. 이것 지금부터 해결하자는데... 우리 지금 얘기를 아직 못했잖아요?

물론 내가 이것은 이해해요. 여기서 결정을 할 충분한 권한을 갖고 왔는지 안왔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한 연구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다음 회담에서 보다 더 진전될 수 있다는 걸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쪽에서 이러저러한 논평을 했으면, 나도 이러저러한 논평을 내용에 대해서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가지고 가급적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북(김정우) : 임선생, 내가 그쪽에서 무얼 말하자는 걸 다 이해할만한데, 그쪽안을 문건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남(임동원) : 들어보지도 않고 이해하는 사람하고 토론을 해야 하니 이게 회의가 잘되냐 말ियो.

북(김정우) : 제일 좋은게 자기 말을 글로 써내는 것이 좋은거지. 글로 써

냈으니까 내가 좀 연구를 하고 다음에 만나자 그것이라 말입니다.

북(손종철) : 위원접촉의 경험도 마구잡고 토론하는 것보다 양측이 그걸 연구를 해서...

북(김정우) :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북(손종철) : 진진적인 것 가지고 나오니까 그게 진척된다 이겁니다.

남(김인호) : 그럴 바에야 기초발언문이나 전화통지문으로 서로 주고 받으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나와서 회담을 합니까? 이 바쁜 사람들이 시간을 내가지고 나왔으면, 여기서 진지하게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이야기를 해야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얼굴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의견교환이 이루어집니까?

내가 위원접촉을 하면서도 느낀 것은 서로 얼굴을 맞대놓고 서로 눈을 보면서 서로 이야기를 해야 이야기 진전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는 원고문안을 꼭 들고가서 검토를 해야 다음 토론이 이루어지느냐 말이에요.

북(손종철) : 김위원선생, 위원접촉에서 느꼈다는데 나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요. 왜 그런가? 마주앉아 얘기를 해봐야 우리 경제문제 15조를 토론할 때 네개 차이점이 하나 해결이 안되었다. 그러니까...

남(김인호) : 해결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쟁점으로 나오는 것이고, 쟁점으로 나왔으면 서로 토론을 해야 돼요. 토론을 해서 뭐가 다르냐 하나하나 밝혀 나가는 과정이 엄청난 진전이에요. 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귀측에서는 진전이 없다고 얘기하냐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 위원장께서 읽은 기초문을 보면 어디 하나 귀측에 대

해서 비난하는 구절이 있느냐 말이에요. 점잖게 문제가 있는 건 이런 차이가 있다, 그러나 해소해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귀측의 발언문을 볼 것 같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게 우리가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던 말이에요. 이게 회담을 하자는 작정이나 말이에요.

북(손종철) : 김선생, 그 문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오늘이 부속합의서가 나왔다고 봐요. 그렇게 우리 앉아서 말공회전만 하지 말고 좀더 적극적인 이런 안을 갖고 나와야 돼요.

남(김인호) : 똑같은 사안을 보더라도 위원접촉 우리 여섯 사람이 참 그동안 어렵게 했는데... 우리가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보는데... 나 솔직히 얘기해서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북(김정우) : 임선생, 이렇게 합시다. 우리 서로...

남(임동원) :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되죠. 우리는 1차 최초안을 구체적인 걸 갖고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만 하자고 할 것 같으면 내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

북(김정우) : 우리도 많습니다. 그 구체적이라는 것이 무어냐?

남(임동원) : 그러니까 자꾸 감정적으로 그런 얘기만 할게 아니라 내용을 가지고 토의하자는 거예요. 회의에 내용 가지고 토의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북(김정우) : 우리 이제 의사교환 다 했는데, 이제는 연구를 해서 또 뭘 우리가 수용하고 그쪽에는 뭣이고 이걸 해야지...

남(임동원) : 환담할 때만 좋은 말 나오고 회의할 땐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거래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으뜸가는 거래

예요? 우리가 지금 민족의 밝은 장래를 열어 나가자 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대결의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북(김정우) : 임선생, 그 말 하기에 앞서 자신의 입장을 좀 검토해 보시오.

남(임동원) : 또 그렇게 얘기하네.

북(김정우) : 그 말 하기에 앞서 협력·교류분과위에서 선생이 지금 취한 입장이 뭇인가? 다른 분과가 어떻게 나가는가? 진짜 통일지향적인가?

남(임동원) : 거 왜 다른 것을 자꾸 가지고 여기서 얘기해요? 그러면 차라리 다른 분과위 가서 위원장을 하시지. 지금 우리는 교류·협력분과위를 논해야 돼요.

북(김정우) : 여기도 왜 사회문화 부속합의서에서 『민족공동체 통일 회복 발전을 위해』 이런 문구를 잡아 넣어서 그쪽에서 문장을 내놓았어요?

남(임동원) : 그것 대답을 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얘기를 들으라 이거예요.

북(김정우) : 그것 대답할 것도 없어요. 우리 다 그쪽 의도를 아니까. 그래서 우리 그쪽에 대한 것을 요구하고 다음에 만나야 되겠어요.

남(임동원)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오해가 있어요. 민족공동체, 내가 그걸 얘기할게요. 지금 그...

북(김정우) : 지금까지 선생이 통일을 그래도 맡아 가지고 외교안보연구원장으로 있었는데, 그 『민족공동체 통일 발전을 위하여』하고 쓰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한다는 것 모릅니까?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까?

남(임동원) : 아니예요. 그것은 상당한 오해가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예요. 그쪽에도 「민족대단결」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유사한 얘기예요.

북(김정우) : 어디 그게 같습니까? 공동체와 대단결이...

남(임동원) :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데...

북(정덕기) : 민족은, 형성 당시부터 공동체입니다. 오랫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이미 공동체로 이루어졌는데 공동체 회복이다, 이진 뭐인가? 민족의 이질화를 염두에 둔 문제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시하는 거예요.

남(임동원) : 지금 이질화가 안됐다고 보는 것이지요?

북(정덕기) : 예, 무엇이 이질화됐습니까?

남(임동원) : 그럼 민족공동체가 처음부터 공동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서로 오해가 있기 때문에, 해석에 상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서로 풀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회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공동체라고 할 때 우리는 문화공동체, 경제공동체, 사회공동체, 정치공동체, 이렇게 여러개로 세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에 정치공동체를 이룩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우린 그런 뜻에서 공동체라는 말을 사용하고 거기선 다른 뜻으로 공동체라는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간격이 있어서 문제가 되지만, 그래서 우선 이 사회·문화·경제적 공동체부터 슬슬 이루어 나가자. 사회·문화적 공동체가 더 쉽지 않겠느냐?

북(정덕기) : 우리가 우리 방안에 「연방제」라는 말 했습니까?

남(임동원) : 내 말 들어봐요. 말 들어보고 얘기해야지, 왜 그래요? 그래서 이와 같이 분야별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총괄해서 민족공동체를 형성해 나간다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이 귀측에서 도저히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그건 이상하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토론을 해가지고 귀측에서 못받겠다면 못넣는 것이지, 양보하는 것이지.
그래서 회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죽어도 못넣겠다 하면,
이건 안하겠다 하는 겁니까? 우리로서는...

북(정덕기) : 이 자리에서 수리할 수 있습니까?

남(임동원) : 물론이죠. 대권을 내가 다 갖고 있어요.

북(김정우) : 좋습니다. 그러면 『민족공동체 회복 발전』이라는 걸 그쪽에서
잘못 제의한 걸로 처리하겠어요.

남(임동원) : 귀측에서 이걸 오해한다면 내가 빼겠어요. 토의를 해야 될 것
아닌가 말ियो, 이렇게...

북(김정우) : 임선생, 앞으로 회담을 위해서 내가 강조해 드리겠는데, 임선
생 좀 명백히 기억하시오. 우리 주석님께서는 임선생을 접견하실 때 무
어라고 말씀하셨오? 그쪽 정원식 총리가 민족이 이질화돼 있다 이럴 때,
우리 주석님께서 말씀하셨다 말ियो. 『아니오. 우리 민족은 핏줄도 하나,
언어도 하나, 풍습도 하나, 동질성이오.』 그렇게 우리 주석님께서 그쪽
총리를 접견할 때 말씀하셨으면 그쪽에서 이런 문제를 자꾸 가지고 상
대방을 자극하면 안됩니다. 몰라서 그랬다면 빼시오.

남(신현웅) : 우리가 하나의 언어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벌써 조
금 이질화...

남(임동원) : 이렇게 서로 이질화가 돼 있어요. 민족공동체라는 용어에 대
한 해석 차이가 있을 정도로 서로 이질화돼 있어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북(김정우) : 자, 좋습니다. 그쪽에서 이걸 뺐으니까 이 문제는 이만하고,

우리가 그쪽안을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고 다음번에 만납시다.

남(임동원) : 그리고 또 내가 한가지 더 얘기할게요. 내가 다른 건 얘기 안 할게요. 내가 많은 걸 토의하려고 준비해 왔는데, 토의할 준비가 안됐다고 그러니까 할 수가 없지. 나 혼자서 토의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나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딱 여기서 몇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김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논평한 문제와 관련해서 몇가지만 내 견해를 말씀드리겠어요. 민족공동체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것은 뻔 수도 있어요.

북(정덕기) : 거기다 「한」자만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남(임동원) : 내 말 들어보세요. 왜 또 자꾸 시비를 걸어요? 빼준다는데... 우리는 민족공동체라는 말이 서로 다르게 쓰일 정도로 이질화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극복하자는 거예요. 이질화가 안돼 있긴 뭐 안돼 있어요? 이렇게 이질화가 돼 있어요.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것은 서로 이견 난 못받겠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기본합의서 채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북(김정우) : 임선생, 말은 좀 짧게 할수록 좋습니다.

남(임동원) : 내 말 들어봐요. 가만있어봐요. 나는 당신 길게 얘기하는 것 다 들어주었어요. 그러지 말아요. 회의하는 자세 그러면 못습니다.

기본합의서 제1조에 『남과 북은 상대방의 체제를 존중한다.』 거기선 「제도」로 돼 있어요. 체제, 제도, 서로 해석이 달라요. 그쪽에선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라는 것을 주장했고, 우리는 처음부터 체제를 주장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주 오랜 토의를 거친 후에 제도와 체제가

같은 뜻으로 쓰여지고 있다는데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채택했지 않습니까? 용어 하나 조그마한 것도 상당히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질화」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이질화라는 말이 듣기가 이상하다 하면 다르게 써도 좋지만,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중의 하나가 법적·제도적 장치를 철폐하는 문제 없이는 절대로 합의볼 수 없다 하는데, 그리고 이것은 국가보안법을 의미한다 이런데... 그 얘기는 김선생이 조금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이거 벌써 한두번 제기된 문제가 아니고 수십번 제기되는 문제예요. 남북간에 수십번 토의한 문제입니다.

북(김정우) : 결론만 말씀하고...

남(임동원) : 결론 얘기할게요. 왜 그렇게 성급하게 그래요?(웃음) 말도 제대로 못나오게... 그것은 국가보안법 그것이 통일에 저해가 된다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그쪽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귀측이 갖고 있는 형법에 이러저러한 통일에 장애되는 조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같이 법률공동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논의해서 동시에 같이 하자 하는게 오래 전부터의 우리 입장이에요. 그런데 자기 것은 안하고 남의 것은 없애라, 이런 사고방식을 그만두자.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북(김정우) : 거기 북과 남을 했는데, 무슨 자기 것만이에요? 북과 남이라고 썼다고요. 문장을 보시오.

남(임동원) : 가만있어 봐요.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 내가 논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초발언문에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필요하다면 이런 문제는 나중에 정치분과위원회에 넘겨서, 정치분과위원

회에서 합의되는 법률문제를 다루는 공동위원회가 있지 않겠어요? 그 이름이 무엇이든지간에... 거기서 논의하게 될 문제지, 여기서 빼라 넣으라 할 문제가 아니다. 이건 오래된 문제예요. 그리고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는 귀족의 형법하고 같이 해결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입장을 알고 있잖아요? 왜 이런 걸... 민족공동체는 우리가 귀족이 싫어하는 걸 모르고 넣은 거지만, 이것은 우리측이 싫어하는 입장을 알면서 왜 집어넣어요? 그건 안돼요.

그 다음에 이산가족문제, 이건 적십자회담에서 20년간 해왔는데, 합의만 해놓고 뭐 이러저러한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실천과 연관시켜서 아무런 것도 진척되지 못했잖아요? 지금 이것이 적십자회담에 넘겨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말이에요. 혹시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난 귀족의 의견도 존중해 주려고 그러합니다. 혹시 귀족에서 의지를 바꾸었다면 적십자회담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논쟁을 벌여 왔는데, 바로 적십자회담에서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합의서 제18조에 남과 북은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책임을 진다 하는 것을 합의를 해놨다 이거예요. 18조에...

북(김정우)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남(임동원) : 잘 알겠죠? 실현한다 했어요. 그런데 기본합의서에 이렇게 합의를 해놓고 또 넘겨버려요? 이것 기본합의서에 충실하자는 말하고 다른 얘기에요.

북(김정우) : 기본합의서를 잘 이해 못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남(임동원) : 이 문제는 내가 쪽 다루어온 문제예요.

북(김정우) : 말하자면 대책을 강구한다...

남(임동원) : 대책은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이고요, 그 앞의 이산가족문제는 『재결합을 실현한다.』예요. 실현한다!

북(김정우) : 실현하는 방법이 그렇게 하지요. 자기 전문기관에다가... 바로 실현을 그렇게 한다 말입니다.

남(임동원) : 그러니까 그것은 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고 내가 바로 1차 회의때부터 얘기했는데, 아직도 그 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의지를 가져야 해요.

북(김정우) : 우리는 의지가 있어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을 그렇게 해야 돼요.

남(임동원) : 의지가 있으면 우리가 내놓은 부속합의서 정도의 것은 정부간에 딱 합의를 보고... 적십자 일반단체와 달라요. 이건 당국이 해결한다 했으니 당국이 이 정도의 기본원칙적인 것은 부속합의서에 합의를 하고, 그 집행에 대해서는 적십자에 넘겨도 좋다 하는 안을 우리가 제시한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든지 일을 되게끔 하려는 것이 우리의 입장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문제에 관해서는 연구를 잘해 주세요.

그 다음에 공동위원회 수는 우리가 4개를 내놓았지만 귀측은 2개를 내놓았고, 그래서 바로 이산가족문제는 귀측이 공동위원회 수도 적게 내놓았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해서 우리가 3개로 수정해서 내놓은 거예요. 지난번 고위급회담에서는 우리가 통행위원회, 통신위원회 각각 구성하기로 여러번 주장해 왔어요. 그러나 귀측의 입장도 고려하고 귀측의 주장도 감안해서 통행·통신을 하나로 묶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것은 경제공동위원회나 사회문화공동위원회에서 할 일과는 성격이 달라요. 도로 연결하고 항공로 연결하고 항만 연결하고 통신하고

기술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것대로 하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많아요. 정의선만 연결합니까? 경원선도 연결하고, 항구 뭐 한두개만 연결합니까? 앞으로 더 연결해야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공동위원회 할 일이 얼마든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개로 하자 하는 우리의 입장을 잘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오길 바라고, 다음에 부속합의서 문제입니다.

부속합의서는 귀측이 오늘 얘기한 것을 내가 한번 다시 묻고 싶은데, 4개로 우리가 하자는 것입니다. 세계의 공동위원회와 적십자사가 각각 자기의 일을 그 부속합의서에 토대를 두고 시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명백한 의무를 부여하는 견해서 하나씩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측이 전에 제의한 것은 포괄적 단일합의서를 가지고 기본합의서의 조항을 되풀이 하는 형식으로 전개했는데, 오늘 얘기하는 것은 장절을 우리가 주장하는 4개 분야로 편성할 수 있다는 이런 뜻으로 제의한 것이죠?

북(김정우) : 장절을 두자. 합의서 하나에다가 1장은 경제협력·교류, 2장은 사회문화, 3장은 인도문제, 통행·통신은 경제에다 넣자는 것이니까...

남(임동원) : 토의는 나중에 합시다만, 통행·통신은 경제 아닌 비경제분야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경제분야에다 넣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이 문제는 귀측이 그런 제안을 하니 우리도 연구를 또 해봐야 되겠죠. 그것은 내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기가 뭣하지만 우리가 연구를 해 볼게요.

다음에 상담소문제, 왜 우리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가 하면 지금 조그

마한 교역이 남북간에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교역량만 하더라도 우리 남쪽 통관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1억 이삼천만달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다 홍콩이라든가 북경이라든가 일본 등에서 만나가지고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제3국에서 만나서 할 필요가 뭐 있는가? 연락을 해서 판문점에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예요. 귀측에서도 늘 주체성 하면서 제3국 배제하는 마당에 왜 우리 민족끼리 가까워서 못하느냐?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서 하면 더욱 좋지만 그것이 될 때까지는...

북(김정우) : 임선생, 그래서 내가 아까 제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경제를 전문으로 보는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통일원차관보다 그 문제는 더 리해 측면에서 깊겠지. 그러니까 필요하면 공동위원회에서 토론하자. 그러나 여기서 그것을 아직 정하지 말자.

남(임동원) : 알겠어요. 그런 각도에서 제기했으니까 『분열주의적인』 그런 얘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건 통일주의적인 입장에서 낸 거예요. 그런 아주 쓸데없고 자극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당국승인문제 말이죠. 이 문제는 설명에서 자세히 했기 때문에 제가 되풀이는 안하겠습니다만, 오해가 존재하고 있어요. 이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체제예요. 시장경제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맨처음에 남북간 합의된 데에서 규정만 만들어 주면, 그 다음에는 경제인들이 자유롭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규정 만들 때까지가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창구일원화 어쩌구 자꾸 그러는데 오해를 푸세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최초에는 창구일원화가 안될 수가 없지. 정부가 나서서 운동경기규정 만들듯이 규정을 만들어야 하고... 또 그 다음

에 중요한 것은 그쪽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게 있는 것 같아요. 책임 없는 사람하고 해 가지고 밀지는 장사 했을 때 누구한테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어요?

북(김정우) : 그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법인문제라든가 론할 때 론할테니까, 그만 들어 두시오. 다 대책이 있습니다.

남(임동원) : 귀측에서 아까 얘기한 문제에 관해서만 내가 이 정도로 얘길 해 두고, 다음번에 나오실 때에는 오늘 우리가 기초발언을 할 때 얘기한 것을 많이 참고로 해서 자세도 좀 바꿔 가지고 일을 하려면 하자는 방향으로 임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분과위원회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을 안해도 됩니다. 다른 분과위는 다른 분과위에서 해 나갈 겁니다. 내가 지금 보니까 여태까지 다른 분과위원회 진전이 없었으니 교류·협력분과위원회도 오늘 이 상황밖에 못하겠다, 다른 걸 봐서 하겠다 하는 것이 귀측의 입장인 모양인데, 그렇게 합시다. 다음에 만나서 하자구요. 그럼 또 진전이 있을 겁니다.

북(김정우) : 날짜를 27일로 정합시다.

남(임동원) : 27일이 월요일이로군요. 요샌 뭐 고속도로가 되었으니까, 시간이 많이 안걸리겠어요?

북(김정우) : 두시간.

남(임동원) : 아침 일찍 오면 되겠구만.

북(김정우) : 그럼.

남(임동원) : 우리는 27일도 좋고 28일도 좋은데 ...

남(김인호) : 월요일은 되게 바쁜데...

남(임동원) : 28일 괜찮아요?

북(김정우) : 27일. 뭐 아까는 시간이 없는데 자꾸 늦게 만난다고 그러더니
(웃음), 놀거 다 놀고 언제 회담하겠습니까?

남(임동원) : 김선생, 나는 어떤 안을 갖고 나왔는지 얘기를 할게요. 오늘
많이 진전되고 하면 위원접촉을 내주에 두번 해가지고 28일쯤 가서명을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귀측에서 안하겠다니까, 늦추자
니까 늦추는 수밖에 없지.

북(김정우) : 27일로 합시다.

남(임동원) : 그래, 27일로 합시다.

북(김정우) : 그렇게 하고 우리 옛날 선조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산
지석」이다. 남의 말을 들어서 수양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좀 우리 의
견을 참조를 하십시오.

남(김인호) : 우리 위원접촉할 때도 보면 북측에서는 한번도 양보를 하는
법이 없어요. 서로 주고 받고 해야...

남(임동원) : 그리고 김선생, 내 꼭 한가지 이야기해야 되겠는데 언제 기차간
에서 내려오면서 정원식총리하고 누구누구가 두개 분과위원회로 하자고 합
의를 봤다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김선생이 한 것은 들은 사실이 있지만
언제 그것을 합의했다고... 그냥 이야기했다고 수정을 하세요.(웃음)

북(김정우) : 아니 다음번에, 그것 록음되어 있지? ...그만 합시다.

<雙方 委員 人事 交換 後 退場>